

-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영인)

목 차

연번	안 건 명	소관부서	페이지
1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복 지 정 책 과	1
2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노 인 복 지 과	11
3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아 동 보 육 과	21
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 동 보 육 과	30
5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2명)	아 동 보 육 과	40
6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영경 의원 등 9명)	박물관사업소	45
7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 등 7명)	체 육 진 흥 과	53
8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선미 의원 등 10명)	문 화 관 광 과	60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복지정책과)
- ☐ 의안번호: 제6191호

2. 요구이유

- ☐ 도춘종합사회복지관 현 위탁운영법인의 해산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주요 용도	현 위탁운영법인
1	도춘종합 사회복지관	중원구 도춘북로 92 (도춘동)	연면적 5,525㎡ (지하2층~지상4층)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강당, 사무실 등	재단법인 순복음선교연합

※ 부설기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5년
- 예산지원: 1,233,397천원(2026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부설기관 예산 별도

- 주요업무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서비스 제공 기능	1. 가족기능강화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서비스 제공 기능	2. 지역사회보호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3. 교육문화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사업
	4. 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 밖의 특화사업
사례관리 기능	5. 사례발굴	사례발굴
	6. 사례개입	사례개입
	7. 서비스연계	서비스연계
지역조직화 기능	8. 복지네트워크구축	복지네트워크구축
	9. 주민조직화	주민조직화
	10. 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개발 및 관리

○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조금지원 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비용추계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도 종합사회복지관 운	소계	1,233,397	1,257,665	1,282,418	1,307,667	1,333,420
	인건비	1,025,847	1,046,364	1,067,291	1,088,637	1,110,410
	운영비	187,550	191,301	195,127	199,030	203,010
	사업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 의견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이 아니라, 현 수탁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수탁자 변경에 따라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으로,
- 같은 조 제5항은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출 근거와 절차가 적정함.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위탁기간, 관리·운영 책임, 시설장 자격, 고용승계 등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탁방식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운영 방식으로 검토됨.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절차와 내용 모두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시행규칙,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검토됨.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사례관리·지역조직화 등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으로 판단됨.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근거와 선정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해 볼 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사무의 목적과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성과 평가 요약서
3.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4.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복지정책과】

1. 대상사업: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검토내용

-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점을 고려,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고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2】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성과 평가 요약서

【복지정책과】

□ 개요

- 도촌종합사회복지관 현 위탁운영 법인의 해산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성과평가)

□ 성과평가 대상

연번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주요 용도	현 위탁운영법인	기 위탁기간
1	도 촌 종 합 사 회 복 지 관	중원구 도촌북로 92(도촌동)	연면적 5,525㎡ (지하2층~ 지상4층)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경로식당, 강당, 사무실 등	재 단 법 인 순 복 음 선 교 합 연	2022.9.11. ~2027.9.10.

□ 성과평가 결과

- 종합사회복지관: 매우 우수 94점

총점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사업 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100)	(12)	(10)	(5)	(5)	(8)	(40)	(5)	(15)
94	11.3	8.7	4.5	4.5	7.3	39	5	13.7

- 주간보호센터: 매우 우수 93.5점

총점	조직 및 인력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 활성화 개선노력	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만족도 제고노력
(100)	(12)	(10)	(5)	(5)	(8)	(40)	(5)	(15)
93.5	12	8.6	4	4.2	6.5	40	4.5	13.7

- 어린이집: 우수 91.04점

총점(100)	정량평가(80)	정성평가(20)	비고
91.04	73.2	17.84	어린이집: 95점이상 매우우수

【참고자료 3】

□ 종합사회복지관: 현황(11개소)

설치일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위탁기간	위탁운영 법인
2007.12.21	산성 종합사회복지관	이순규	수정구 수정남로 306번길 15-16(산성동)	· 연면적 1,559㎡ · 지상4, 지하1	13명	2021.12.21.~ 2026.12.20.	사단법인 새날복지회
1987.08.06	성남 종합사회복지관	전영순	중원구 금빛로 89 (금광2동)	· 연면적 2,726㎡ · 지상3, 지하1	15명	법인소유 시설 (예산지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993.09.17	중탑 종합사회복지관	강일조	분당구 판교로 607 (야탑3동)	· 연면적 2,693㎡ · 지상3, 지하1	18명	2022.09.17.~ 2027.09.16.	사회복지법인 할렐루야복지 재단
1994.12.06	한솔 종합사회복지관	방이정	분당구 내정로 94 (정자2동)	· 연면적 3,335㎡ · 지상3, 지하1	16명	2025.01.01.~ 2029.12.31.	사단법인 다살림복지회
1994.12.05	청솔 종합사회복지관	김재일	분당구 미금로 246 (금곡동)	· 연면적 3,169㎡ · 지상3, 지하1	16명	2023.12.06.~ 2028.12.05.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 종
2014.09.11	도촌 종합사회복지관	이종민	중원구 도촌북로 92 (도촌동)	· 연면적 5,525㎡ · 지상4, 지하2	17명	2022.09.11.~ 2027.09.10.	재단법인 순복음선교 연합
2015.12.01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이 훈	분당구 운중로 254 (판교동)	· 연면적 7,090㎡ · 지상5, 지하2	17명	2023.12.01.~ 2028.11.30.	사단법인 함께하는한숲
2016.08.25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정헌채	[본관]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위례동)	· 연면적 1,166㎡ · 지상2	16명	2024.07.01.~ 2029.06.30.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분관] 수정구 위례서일로1길 22-5(위례동)	· 연면적 611㎡ · 지상3			
2019.10.25	은행 종합사회복지관	박진영	중원구 산성대로518번길 30 (은행2동)	· 연면적 4,707㎡ · 지상5, 지하1	16명	2020.10.01.~ 2025.09.30.	사회복지법인 굿패밀리복지 재단
2025.02.01	위례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오영희	수정구 위례동로 126(위례동)	· 연면적 9,821㎡ · 지상6, 지하2	22명	2025.02.01.~ 2030.01.31.	사단법인 한국지역복지봉 사회
1998.10.20	분당 종합사회복지관	최미경	분당구 정자일로 33 (금곡동)	· 연면적 13,892㎡ · 지상5, 지하2	18명	법인소유 시설 (자체 운영)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

【참고자료 4】

□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성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5.10.13.>

제8조(수탁자선정)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7.3.29.>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3.29.>

제12조(시설의 운영 등)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일부개정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6.2.17.> <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본조신설 2020.2.24>

-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성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노인복지과)
- ☐ 의안번호: 제6192호

2. 요구이유

-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성남시니어클럽의 현 운영법인 해산 결정으로 수탁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의 일자리 참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 현 운영법인 2026. 5. 30.까지 운영
- ☐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 위탁대상 시설 현황 (2026. 2. 1. 기준)

시 설 명	소재지	종사자	시설규모	주요사업	설치일	현 위탁 운영법인
성남 시니어클럽	수정구 수정남로 10, 2층 (수진동)	24명 (시설장 1, 사회복지사 7, 전담인력 16)	총 1,102㎡ (사무실 387㎡, 사업장 715㎡)	노인일자리 31개 사업 - 공익활동 6개 사업 - 노인역량활용 12개 사업 - 공동체사업단 13개 사업	2006.11.1.	재단법인 순복음선교 연합

-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6. 6. 1. ~ 2031. 5. 31.(5년)
 - 예산지원(예정)액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 63,073,672천 원
※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주요업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단 운영 및 참여자 관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 신규 프로그램 창출
 - 지역 특성 또는 개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직종 개발
 - 노인일자리 관련 상담,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추진 가능한 사업
 - 그 밖의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신청자격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 보조금 지원 외에 성남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의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 시설장 최소 자격 기준 충족: 사회복지사 2급이상,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인 자
-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능력
- 비용추계
- 인건비 3% 상향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분 참고)
 - 사업비 2% 상향 (당해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비 상향분 참고)
 - 운영비 2% 상향 (물가상승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소요액	63,073,672	9,985,416	10,190,394	10,399,629	10,613,211	10,831,233	11,053,789
인건비	3,409,067	527,034	542,845	559,130	575,903	593,180	610,975
사업비	56,548,398	8,964,382	9,143,669	9,326,542	9,513,072	9,703,333	9,897,400
운영비	3,116,207	494,000	503,880	513,957	524,236	534,720	545,414

4.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 의견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성남시니어클럽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이 아니라, 현 수탁법인의 해산 결정에 따른 수탁자 변경 사유로 성남시니어클럽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 지속을 위하여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임.
- 같은 조 제5항은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법,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제출 근거와 절차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성남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성남시니어클럽은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참여자 모집·교육·배치, 사업장 관리, 보조금 집행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탁방식은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운영 방식으로 검토됨.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선정절차 및 위탁기간 모두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성남시니어클럽은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참여자 모집·교육·배치, 사업장 관리 및 보조금 집행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공공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으로 판단됨.
- 또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와 수탁자 선정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해 볼 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사무의 목적과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성남시니어클럽 운영 성과 평가 요약서
3.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

【노인복지과】

1. 대상사업: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성남시니어클럽 운영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관련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내용

- 최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예정임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관련 예산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신규 노인 일자리 발굴·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2】

성남시니어클럽 운영 성과 평가 요약서

【노인복지과】

1. 성남시니어클럽 운영 실적(2025. 12. 31. 기준)

○ 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수행기관	사 업 명	유 형	참여자(명)	예산액(천원)
성남 시니어클럽	소 계		1,615	8,538,202
	노노케어	노인공익활동사업	186	626,820
	우리아이급식안전지킴이	노인공익활동사업	114	384,180
	복지시설관리지원	노인공익활동사업	77	259,490
	폐건전지수거사업	노인공익활동사업	20	67,400
	지역사회돌봄	노인공익활동사업	24	80,880
	공공시설관리지원사업단	노인공익활동사업	170	572,900
	공공행정업무지원	노인역량활용사업	87	736,368
	공영주차장시설관리지원	노인역량활용사업	120	1,015,680
	보행로정보수집전문가	노인역량활용사업	40	338,560
	복지서비스	노인역량활용사업	90	761,760
	시니어금융업무지원	노인역량활용사업	51	431,664
	시니어안전모니터링	노인역량활용사업	24	203,136
	시니어프렌즈	노인역량활용사업	70	592,480
	아동돌봄시설지원	노인역량활용사업	80	677,120
	유아언어발달촉진지원	노인역량활용사업	16	135,424
	장애인직업적응지원	노인역량활용사업	40	338,560
	초등학교돌봄	노인역량활용사업	40	338,560
	공동작업장	공동체사업단	190	507,300
	밥이랑국시랑	공동체사업단	15	40,050
	빵과자사업단	공동체사업단	24	64,080
	엄마손맛	공동체사업단	18	48,060
	자원순환애쓰지(ESG)사업단	공동체사업단	10	26,700
	장인진기름	공동체사업단	8	21,360
	체험학습사업단	공동체사업단	10	26,700
	카드전달사업단	공동체사업단	16	42,720
	카페쉽표	공동체사업단	14	37,380
	카페WITH	공동체사업단	12	32,040
	쿵떡	공동체사업단	14	37,380
	행복그린마켓	공동체사업단	17	45,390
	6공카페	공동체사업단	18	48,060

2. 성과평가

가. 관련근거: 성남시니어클럽 성과평가 결과 보고【노인복지과-7714호】

나. 평가기간: 2024. 7. 1. ~ 2025. 12. 31.

다. 평가지표: 4개 지표, 11개 항목

라. 평가결과: 93점(전반적 양호)

시설운영실적	조직·인력관리 적절성	재정관리적절성	사업성과
“우수”	“보통”	“우수”	“우수”

마. 총 평

- 성남시니어클럽은 2006년부터 성남시를 대표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생 2막을 여는 시니어들이 노년기를 활기차고 건강하고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노인일자리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본조신설 2020.2.24>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아동보육과)
- ☐ 의안번호: 제6194호

2. 요구이유

- ☐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 위탁대상 시설 현황(신규 2, 재위탁 5)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소 재 지	면적 (㎡)	정원 (명)	종사자 (명)	개소예정일 (현 수탁자)	비 고 (위탁기간)
신규	수정유스센터 (신흥2동)	수정구 희망로 533번길21	128.98	25	4	2026.7. 예정	계약일 ~ 2031.6.30. * 리모델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구미동)	분당구 구미동 28번지	214.78	45	5	2026.8. 예정	
재위탁	14호점 여수동 (도촌동)	중원구 양현로 379	90.16	20	4	가천나눔 사회적협동조합	2026.7.1.~ 2031.6.30.
	15호점 다산관퍼스트파크 (판교동)	분당구 판교백현로 38	153.03	30	4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6.7.1.~ 2031.6.30.
	16호점 호야 (하대원동)	중원구 둔촌대로33번길 9, 2층	106.26	25	4	사회적협동조합 꿈발	2026.7.1.~ 2026.9.30.
	20호점 북정동 (북정동)	수정구 북정로 96번길 30-1, 4층	148.75	35	5	가천나눔 사회적협동조합	2026.7.1.~ 2031.6.30.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운중동)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71	358.43	60	6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6.1.~ 2031.5.31.

※ 16호점(호야)는 하대원동 220-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 일정에 따라 연내 폐지 예정(6월 사업시행공고, 10월 착공 예정)으로 기존법인 위탁 연장으로 진행하고자 함

□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위탁대상 사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종 사 자: 5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 3명, 취사원 1명)
 - 운영시간: 월~금(주 5일) / 학기 중 10시~20시, 방학 중 9시~20시
 - 프로그램: 숙제 및 독서지도, 예체능, 체험활동 등
 - 어린이식당 운영: 이용 아동 전원 급·간식 제공(일시 돌봄 포함)
- 수탁자 선정 방법: 지정위탁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선정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선정
- 비용추계
 -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2026년도 기준, 개소당)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2026년)	비 고
계	200,998		
다함께 돌봄센터	200,998	•센터장(8시간) 월3,245천원×1명 •전일제 돌봄교사(8시간) 월3,012천원×1명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월1,506천원×2명 •운영비 지원: 취사원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공공요금 등 ※ 종사자 호봉 및 정원에 따라 센터별 상이	개소당

• 연도별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7,469,880	1,406,986	1,449,196	1,492,672	1,537,451	1,583,575

4.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 ☐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 의견

-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자치사무인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전임.
 -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5개소)과 신규 설치에 따른 신규 위탁(2개소)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임. 다만, 16호점(호야)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단기 연장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
 - 같은 조 제5항은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의회 동의요구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어 제출 근거와 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시설로서, 같은 조 제2항은 시장이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아동 안전관리, 돌봄 인력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함.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무는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업무로 판단됨. 이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위탁방식은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운영 방식으로 검토됨.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은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됨.
-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선정절차 및 위탁기간 모두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16호점(호야)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연내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2026.7.1.~2026.9.30.까지 기존 수탁법인과의 단기 연장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임. 이는 시설 존치기간이 제한되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로 보이며, 사업 종료 시점까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됨.
- 신규 2개소의 경우 초등 방과 후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재위탁 5개소의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매우우수 3, 우수 1, 보통 1)를 토대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임. 다만, 평가 결과가 ‘보통’인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개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16호점(호야)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연내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2026.7.1.~2026.9.30.까지 기존 수탁자에 대한 단기 연장 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설 존치기간이 제한되는 특수성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판단되며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결정으로 보임.
- 종합해 볼 때,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해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성과 평가
3.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

【아동보육과】

1. 대상사업: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검토내용

-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지역내 돌봄공백 해소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무임. 특히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의 역할이 서비스의 질과 운영 효율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전문 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돌봄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직영 운영시 우려되는 행정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함.
- 따라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성과 평가 요약서

【아동보육과】

1. 개요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에 대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

2.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성남시 온종일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성과평가)

3. 성과평가 대상

- 위·수탁 현황: 하반기 재위탁 대상 5개소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소 재 지	면적 (㎡)	정원 (명)	종사자 (명)	개소예정일 (현 수탁자)	비 고 (위탁기간)
재위탁	14호점(여수동)	중원구 양현로 379	90.16	20	4	가천나눔 사회적협동조합	2026.7.1.~ 2031.6.30.
	15호점 (더샵판교퍼스트파크)	분당구 판교백현로 38	153.03	30	4	사단법인 꿈의아이들	2026.7.1.~ 2031.6.30.
	16호점(호야)	중원구 둔촌대로33번길 9, 2층	106.26	25	4	사회적협동조합 꿈밭	2026.7.1.~ 2026.9.30.
	20호점(북정동)	수정구 북정로96번길 30-1, 4층	148.75	35	5	가천나눔 사회적협동조합	2026.7.1.~ 2031.6.30.
	판교대장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71	358.43	60	6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6.1.~ 2031.5.31.

4.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 3, 우수 1, 보통 1]

시설명	성과지표							총점	평가 결과
	공통지표(60점)			특성화지표(40점)					
	시설 운영	조직· 인력관리	재정 관리	만족도 조사					
				이용률	정서 지원	학습 지원	문화 예술		
14호점(여수동)	15	15	25	10	10	10	10	80	보통
15호점(더샵판교퍼스트파크)	18	15	25	10	10	10	10	98	매우 우수
16호점(호야)	20	15	25	3	10	10	10	93	우수
20호(북정동)	20	10	25	10	10	10	10	95	매우 우수
판교대장초등학교	20	15	25	10	10	10	10	100	매우 우수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1. 8.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온종일 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온종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교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12.13.>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양육, 교육·문화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질·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3.>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시,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12.13.>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신설 2021.12.13.>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시가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 <신설 2021.12.13.>

다.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신설 2021.12.13.>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
<일부개정 2020.2.24.>
-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결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본조신설 2020.2.24>

-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 ☐ 제 출 자: 성남시장(아동보육과)
- ☐ 의안번호: 제6195호

2. 요구이유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 위탁대상 시설 현황: 변경 및 신규위탁 6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규모(㎡)	정원	위탁기간	비고
1	판교밸리 포레자이	수정구 고등로 33	143㎡	41명	2026.9.1.~2031.8.31. (5년)	변경
2	백현하나	분당구 판교역로 87	315㎡	96명	2026.9.1.~2031.8.31. (5년)	〃
3	판교가온	분당구 판교대장로 77	149㎡	39명	2026.9.1.~2031.8.31. (5년)	〃
4	판교다온	분당구 판교대장로 5길 20	176㎡	45명	2026.9.1.~2031.8.31. (5년)	〃
5	분당파크리버	분당구 돌마로 171 105동	114㎡	43명	2026.9.1.~2031.8.31. (5년)	〃
6	분당어린이 종합지원센터 내 (미정)	분당구 구미동 28번지	569㎡	49명	계약체결일~2031.8.31.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신규

- ☐ 주요 위탁내용

- 위탁 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제공(영아·장애아·야간연장 등)
-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운영 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 시 지원 내용: 국고 보조시설 지원 기준에 의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능보강비, 공공요금(사용 금액의 80%) 등
- 보육료 수입: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
 -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름)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인건비 지원
 - 선정 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사기준 및 결정: 위원평가(60점), 서류평가(40점)

○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 ※ 기타 내용은 안건 참조

○ 수탁자 선정 방식 : 모집 공고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비용추계

- 교직원 인건비 지원(30% ~ 100%) (단위: 10호봉 기준, 천원/년)

구 분	원장	교사	조리사
인건비 보수총액	34,803	29,581	25,509
인건비 지급액(연)	27,842	8,874 ~ 23,664	25,509
인건비 지급기준	80%	30% ~ 80%	100%

- 보육교사 수당: 처우개선비 등 6개 수당(6,840천원 ~ 13,320천원/년)
- 어린이집 운영비: 공공요금, 취약보육 등(14,688천원 ~ 20,688천원/년)
- 연도별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28,481,744	5,364,667	5,525,607	5,691,375	5,862,116	6,037,979

4. 관계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5조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검토 의견

□ 동의안 제출의 적법성

- 본 동의안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5개소와 신규 설치 1개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의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출 근거와 절차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의 적정성 등 검토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교육, 취약보육 제공, 보육교직원 인사·복무 관리, 시설 유지관리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시설임.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은 민간위탁 추진 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 전문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육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 유지가 전제되나, 전문 운영기관의 경험과 인력관리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수행방식으로 판단됨.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의 적정성 검토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는 수탁자선정심의 절차와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 절차를 거쳐 위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신규 1개소는 지역 내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기존에 운영 중인 5개소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모두 ‘우수’ 등급으로 확인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설인 만큼, 위탁 이후에도 보육의 질 관리, 회계 투명성, 인사·복무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향후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서비스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됨.

참고자료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자료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
3.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

【아동보육과】

1. 대상사업: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가. 관련근거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 관리·운영 사무는 민간에 위탁 가능함.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보육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관련법령 체계에도 부합함.

나.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위탁기간(5년 이내)도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절차 요건이 모두 충족됨.
- 성남시는 2026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 모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수한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국공립 보육시설의 민간위탁은 공공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운영모델로서 행정적·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동의안은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2】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성과 평가 요약서

【아동보육과】

1. 큰 거

- ☐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성과평가)
-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성과평가)

2. 성과평가 대상

- ☐ 위·수탁 현황: 2026년 하반기 변경 위탁대상 5개소

연번	어린이집명	시설장	소재지	규모(㎡)	정원	운영기간
1	관교밸리 포레자이	김선화	수정구 고등로 33	143㎡	41명	2021.7.1.~2026.6.30.
2	백현하나	임유미	분당구 관교역로 87	315㎡	96명	2021.9.1.~2026.8.31.
3	관교가온	김진형	분당구 관교대장로 77	149㎡	39명	2021.12.1.~2026.8.31.
4	관교다운	홍선미	분당구 관교대장로 5길 20	176㎡	45명	2021.10.1.~2026.8.31.
5	분당파크리버	김나정	분당구 돌마로 171 105동	114㎡	43명	2021.10.1.~2026.8.31.

3. 평가개요

- ☐ 개 요
 - 관련근거: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 평가기간: 위탁기간 내
 - 평가대상: 변경위탁 5개소
 - 평가범위: 정량평가(80점) + 정성평가(20점)
 - 정량평가(80점): 어린이집 성과평가(기준표 자체평가)
 - 행정지도 건수에 따른 성과지표(정량평가) 점수 1~4점 차감
 - 정성평가(20점): 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 평가지표 세부내역

① 정량평가(공통지표): 80점

- 조사대상: 하반기 위탁 어린이집 원장 7명
- 평가항목: 4개 세부영역 18개 지표, 총 42문항
 - 운영관리, 인적관리, 보육사업수행, 교사자질 향상

② 정성평가(만족도 조사): 20점

- 조사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재원아동 학부모
- 평가항목: 보육환경 등 5개 영역
 - 보육환경, 보육프로그램, 안전, 급·간식, 가정연계, 상호작용

4. 성과평가 결과

○ 정량평가 결과(80점)

연번	시설명	A.정량 평가 합계 (A=B-C)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 및 환산 점수						C.감점 (행정 지도 건수*)
			B.환산 점수 (80점)	소계 (100점)	조직운영(14)		사업관리(9)		
					운영관 리	인적관 리	사업수 행	보육관련 지원	
1	관교밸리 포레자이	70.6	73.6	92	44	18	19	11	-3
2	관교가온	72.4	74.4	93	48	15	19	11	-2
3	관교다운	71.6	73.6	92	44	18	19	11	-2
4	분당파크리버	72.6	73.6	92	44	18	19	11	-1
5	백현하나	73.6	73.6	92	48	13	20	11	0

* 위탁기간 내 행정지도 건수에 따른 점수 차감:

1~2건: -1점, 3~4건: -2점, 5~6건: -3점, 7건 이상: -4점

○ 정성평가 결과(20점)

시설명	환산 점수 (20점)	평균 점수	세부영역 (5점 척도 설문조사)				
			보육환경	보육 프로그램	안전· 급간식	가정연계	상호작용
관교밸리 포레사이	19.88	4.97	4.96	4.94	4.96	4.99	4.99
관교가온	19.60	4.90	4.88	4.91	4.88	4.93	4.91
관교다운	19.8	4.95	4.95	4.91	4.95	4.99	4.96
분당파크리버	19.71	4.93	4.93	4.91	4.91	4.94	4.93
백현하나	19.86	4.96	4.93	4.94	4.97	4.97	5

○ 성과평가 결과 : 우수 5개소

어린이집명	평가 결과*	합 계	성과평가	
			정량평가(80점)	정성평가(20점)
관교밸리 포레사이	우수	90.48	70.6	19.88
관교가온	우수	92	72.4	19.60
관교다운	우수	91.4	71.6	19.8
분당파크리버	우수	92.31	72.6	19.71
백현하나	우수	93.46	73.6	19.86

* 95점 이상: 매우 우수, 90~94점: 우수, 85~89점: 보통, 80~84점: 미흡, 80점 미만: 매우 미흡

○ 총 평

- 2026년 하반기 변경위탁 대상 5개소 어린이집 모두 우수(90점 이상)로 평가됨. 보육사업안내를 기반으로 하여 위탁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였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 운영 필요함.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2023. 12. 26.>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23. 12. 26.>

[전문개정 2007. 10. 17.][제목개정 2011. 6. 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8.14><일부개정 2018.9.17.><중전 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9.07.15.> <개정 2022.12.19.>

②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19.07.15.> <개정 2022.12.19.>

제15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한다. <일부개정 2014.09.22>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65세까지 남은 임기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와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7.8.14.><일부개정 2018.9.17., 2023.8.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2018.9.17.>

④ 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09.22., 2016.9.30.>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2.2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일부개정 2020.2.24.>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일부개정 2020.2.2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의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 사무는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항신설 2016.2.17.>
<일부개정 2020.2.24.>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20.2.24.>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본조제목개정 2020.2.24.>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7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본항개정 2020.2.24.>

제15조(성과평가) <본조신설 2020.2.24>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성남시 온종일 돌봄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서희경 의원 등 12명
- ☐ 의안번호: 제6193호

2. 제안이유

- ☐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비영리 조합 운영 초등 돌봄시설(협동돌봄센터)을 온종일 돌봄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여 민간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돌봄 아동의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온종일 돌봄 시설 정의 확대(안 제2조제4호다목 신설)
- ☐ 돌봄 아동 안전 보장 규정 신설(안 제14조 신설)

4. 관계법령

- ☐ 「아동복지법」 제52조

5. 입법예고

- ☐ 예고기간: 2026. 2. 12. ~ 2. 23. 【12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부서 의견(아동보육과: 수용)

- ☐ 아동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이용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조항(보험가입, 안전교육) 신설 사항으로 원안수용하고자 함

7. 검토 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에서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성남시 온종일 돌봄 시설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 아울러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¹⁾제4호**다목은 상위법에 근거한 협동돌봄센터를 조례상 온종일 돌봄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치입법 범위 내에서 시설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 **안 제14조(안전)**는 이용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험 가입 근거 및 안전 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임의규정(“할 수 있다”) 형식으로 규정함.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된 협동돌봄센터를 조례상 온종일 돌봄 시설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또한 돌봄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보험 가입 근거 및 안전 교육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돌봄 아동 보호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1) 현행조례 제2조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시,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시가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
다.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 상위법과의 정합성, 자치입법 권한 범위 및 규정 체계상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현황
2.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현황

□ 아동복지시설

(단위: 개소)

계	생 활 시 설			이 용 시 설				
	소계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소계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 역 아동센터	다 함 께 돌봄센터	학 교 돌봄터
99	11	9	2	88	1	49	34	5

□ 아동복지시설 관련 단체

단체명	센터장(회장)	비고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김용균	49개소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연합회	이명희	39개소 (다함께돌봄센터 + 학교돌봄터)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연합회	표완규	11개소

【참고자료 2】

□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2023. 7. 18., 2025. 4. 1.>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1.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2.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3.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14.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이영경 의원 등 9명
- ☐ 의안번호: 제 6199호

2. 제안이유

- ☐ 성남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안 제4조)
- ☐ 경비 지원(안 제5조)
- ☐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 ☐ 지원경비의 관리(안 제7조)
-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12조)
- ☐ 지도·감독(안 제13조)

4. 관계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24조

5. 조례안 예고

- ☐ 예고기간: 2026. 2. 12. ~ 2. 23. 【12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부서 의견: 수용(박물관사업소)

- ☐ 성남시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성남시민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7. 검토 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지원·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제도를 통하여 공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남시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명확함.
- 특히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 문화기반 확충과 문화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개념을 원용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어 조례 해석상 혼란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적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존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
- 안 제5조(경비 지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관련 경비, 자료의 보존·보관·위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 점은 타당함.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조금 교부 신청, 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환수 및 일정 기간 지원 제외 규정을 두어 행정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음.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성남시의회 추천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문화·예술 단체 추천자 등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원사업의 심의 및 평가,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 종료 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점에서 지원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구조로 판단됨.
- 안 제13조(지도·감독)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업 조사 근거를 규정하여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행정적 관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 체계상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 조례 입안 가능 여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이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또한 문화·예술의 진흥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육성 책무를 성남시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법률상 제정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성남시는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근거로 관내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개 기관에 총 54,7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음(도비 30%, 시비 70%). 다만 이는 도 조례에 근거한 제한적 지원 체계로서, 시 차원의 독자적인 지원 기준과 운영 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는 없는 상황임.
- 또한 성남시는 2027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60,034백만원 규모로 전시동과 체험동을 포함한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아울러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한 세계적 미술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문화 인프라 확장 정책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관내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지원, 시립 문화시설 확충,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 추진이 병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원 근거와 절차, 심의 체계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성남시의 박물관·미술관 지원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법률적·행정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2.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박물관사업소 제공】

1.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 박물관

명칭	등록일	소장자료수	소재지	비고
판교박물관	2013.2.4.	2,763건 5,550점	분당구 판교로 191	공립
디자인코리아 뮤지엄	2020.8.5.	6,600건 21,000점	분당구 양현로 322	사립
신구대학교 우촌박물관	2011.1.19.	1,955건 3,706점	중원구 광명로 377	대학
을지대학교 범석의학박물관	2024.11.1.	722건 5,994점	수정구 산성대로 553	대학

□ 미술관

명칭	등록일	소장자료수	소재지	비고
성남큐브미술관	2012.9.5.	216점	분당구 성남대로 808	공립
현대어린이 책미술관 MOKA	2015.12.14.	335점	분당구 판교역로146번길 20	사립
신구대학교식물원 갤러리 우촌	2016.6.15.	70점	수정구 적푸리로 9	대학

2. 추진 현황

□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3. ~ 12.
- 지원근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지원대상: 관내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관당 1명)
 - 2025년 실적: 3개관(신구대 우촌박물관, 디자인코리아 뮤지엄, 신구대 갤러리 우촌) 프로그램 운영비 54,700천원 지원(도비 30%, 시비 70%)

□ 성남시박물관 건립(2027년 12월 개관 예정)

- 사업기간: 2013. ~ 2027.
- 사업규모: 2개 동(전시동(건립 예정), 체험동(운영중))
- 총사업비: 60,034백만원(국: 919 / 도: 1,881 / 시: 44,834 / 기타: 12,400)

□ 세계적 미술관 건립 기본구상 계획

- 목적: 장기간 방치된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2단계 사업으로 세계적 미술관 건립 추진
- 사업내용: 세계적 미술관 기본구상 및 사업화 계획 용역 실시
- 추진기간: 2026.1. ~ 7.

【참고자료 2】

관계법령 발췌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13조(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5. 29.>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23. 8. 8.>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6. 5. 29.>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2016. 5. 29., 2020. 2. 18., 2021. 1. 12.,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3. 5.>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정용한 의원 등 7명
- ☐ 의안번호: 제6198호

2. 제안이유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시민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수 육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 최근 전문 체육 분야가 확대되고 선수 육성 시스템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학교 운동부 중심에서 스포츠클럽, 종목별 전문 단체와 법인 등으로 체육 인재 양성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변화하는 체육 환경 및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함(안 제4조)

4. 관계법령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10조의2, 제14조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5. 입법예고

- ☐ 예고기간: 2026. 2. 12. ~ 2. 23. 【12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있음(주민의견 31건)

□ 의견 주요 내용

- 리틀야구단 리틀야구장의 1순위 사용 명문화: '전용'이라는 목적에 맞게 대한체육회 등록 리틀야구단이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 전용시설 목적에 맞게 리틀야구단의 리틀야구장 최소 훈련 시간 보장: 학교 야구팀 등에 밀려 훈련 시간이 임의로 축소되지 않도록 최소 시간을 조례로 보호해 줄 것을 요청
- 행정 체계의 명확한 분리
 - 리틀야구: 체육회 소관 → 공공 체육시설(전용구장) 중심 운영
 - 학교야구: 교육청 소관 → 학교 내 운동장 중심 운영
- 시설 충돌 해결 방안 제안
 - 학교 야구팀이 외부 시설에 의존하지 않도록, 학교 운동장에 안전펜스
 - 이동식 마운드 등을 설치하여 학교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6. 부서의견(체육진흥과: 수용불가)

- 우선순위 적용 대상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주관 대회에 한정하지 않고 가맹·회원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까지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공공성 있는 대회의 의미가 희석되고 일반 이용자 차별 우려
- 대한체육회 등록 여부만으로 제1항의 국가, 시의 공익성 행사보다 우선하는 공익적 우선순위 체계를 실질적으로 변경시켜 공공체육시설의 원래 목적을 부정하고 일반이용자 이용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부합하지 않음

7. 검토 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린이·청소년 선수의 훈련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 최근 전문체육의 운영 방식이 학교운동부 중심에서 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정비하려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상위 법령의 체육 진흥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4조제1항**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기본적인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특히 전국대회 입상 선수단에 관한 기준을 기존의 포괄적인 표현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적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현 행	개 정 안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의 경기·행사	4.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가맹·회원 단체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에서 최근 1년 이내 4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단의 경기·훈련·행사
7.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 현행 유지 제1호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제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체육회 또는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3호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호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호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 **안 제4조제2항**은 신설 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선수 또는 선수단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1항에서 정한 사용허가 우선순위보다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가맹·회원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선수단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해당 운동 종목의 전용 체육시설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함.
- **안 제4조제3항**은 신설 규정으로, 복수의 선수단이 동일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성남시 관내 선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임.
- **안 제4조제4항**은 신설 규정으로, 선수단의 우선 사용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필요 시 사용기간 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여 체육시설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린이·청소년 선수의 훈련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행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이용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됨.
- 성남시에는 49개교 22종목 59개팀의 학교운동부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종목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기준이 변경될 경우 학교운동부 선수단과 지역 스포츠클럽 또는 종목단체 간 시설 이용 수요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및 시민 생활체육 이용 간 균형을 고려한 시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회원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공공성 있는 대회의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단에 대한 우선 사용 규정이 기존 공익행사 중심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체계를 변경하여 일반 이용자의 시설 이용 기회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자치입법 권한 범위 측면에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주민 의견과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등을 고려한 집행부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학교운동부 현황
2. 체육시설 현황
3.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 학교운동부 현황: 49개교 22종목 59개팀 731명

(단위: 팀/명)

종 목	학 교 명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9개교 22종목 59팀			16개교 11종목 17팀	20개교 19종목 25팀	13개교 14종목 17팀
22개	학 교	선 수	비등록			
	59	674	57	212명	347명	172명
축 구	2	52	0	상원(16)	풍생(36)	
야 구	7	186	1	수진(14) 서당(등22/비1) 희망대(16)	매송(27) 대원(43) 성일(28)	야탑(36)
농 구	6	68	10	성남수정(등13/비2) 성남(13)	성남(등11/비8) 구미(13)	낙생(10) 분당경영(8)
배 구	1	11	0			송림(11)
하 키	4	61	0		성일(14) 창성(12)	성일(16) 이매(19)
육 상	6	54	34	성남장안(등16/비15) 운중(등15/비9) 중원(등10/비10)	대원(5) 백현(8)	동광(-)
수 영	3	10	0	당촌(5)	서현(5)	동광(-)
롤 러	1	0	0	대하(-)		
빙 상	4	15	0	성남매송(-) 내정(-)	서현(8)	서현(7)
양 궁	2	10	4	수진(등7/비4)	창성(3)	
씨 림	2	12	3	성남제일(등3/비3)	야탑(9)	
볼 링	2	22	0		하탑(10)	분당(12)
레슬링	2	10	1		성남문원(등3/비1)	서현(7)
배드민턴	2	19	0	중부(11)	도촌(8)	
태권도	2	51	0		풍생(23)	풍생(28)
펜 싱	4	29	0		성남여자(9) 영성(6)	성남여자(8) 불곡(6)
복 싱	1	5	3		금광(등5/비3)	
사 격	2	12	0		상원여중(9)	성남여자(3)
유 도	1	6	1	성수(등6/비1)		
골 프	2	16	0		동광(16)	동광(-)
에어로빅힙합	2	1	0		장안(-)	분당중앙(1)
아이스하키	1	24	0		분당(24)	

※ 1종목 이상 육성교(9개교)

- 수진초(2), 성일중(2), 대원중(2), 서현중(2), 창성중(2), 풍생중(2), 동광고(3), 서현고(2), 성남여고(2)

【참고자료 2】

□ 체육시설 현황

○ 공공체육시설

(단위: 개소)

계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축구장	양궁장
359	2	5	22	13	62	38	19	10	1

국공장	야구장	인라인장	농구장	풋살장	간이골프장	가체조장	X-게임장	학 교	
								체육관	인조잔디 축구장
1	3	11	34	13	4	3	4	99	16

○ 종합운동장 현황

위 치	시 설 구 분		주 요 시 설
	부지면적	연면적	
성남종합운동장 (제일로 60)	115,327㎡	74,000㎡	○ 주경기장(17,821석) ○ 씨름장, 하키장 ○ 인조잔디 보조경기장 등 ○ 실내체육관(5,102석) ○ 보조경기장(배드민턴장) ○ 종합스포츠센터(876석)
탄천종합운동장 (탄천로 215)	117,142㎡	110,292㎡	○ 주경기장(16,492석) ○ 체육회관(수영장, 빙상장, 선수숙소, 다목적체육관) ○ 보조경기장, 탄천스포츠센터 등 (볼링장, 테니스장, 실내골프연습장)

【참고자료 3】

□ 관계법령 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 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 제 출 자: 추선미 의원 등 10명
- ☐ 의안번호: 제6196호

2. 제안이유

- ☐ 성남시 관내 산업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발굴·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하고자 함.
- ☐ 성남시의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성남형 산업관광 모델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관광 운영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 산업관광의 육성·운영(안 제13조의2)

4. 관계법령

- ☐ 「관광진흥법」 제2조

5. 입법예고

- ☐ 예고기간: 2026. 2. 12. ~ 2. 23. 【12일간】
- ☐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부서의견(문화관광과: 수용)

- ☐ 산업관광이라는 개별 관광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 없이 수용

7. 검토 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산업시설·산업문화·창업공간 등 지역 산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의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아울러 산업관광의 자원 발굴, 프로그램 개발·운영,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도시로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정책 추진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3조의2(산업관광의 운영)**는 지역 산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산업관광을 육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제1항)하고, 산업문화, 산업시설, 창업공간, 기업활동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관광활동의 범위를 규정(제2항)함. 또한 산업관광 자원의 발굴,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민간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광업무 위탁 규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제4항)으로, 산업도시로서의 지역 특성을 관광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안 제16조²⁾제1항**의 개정은 기존 지원범위 규정에 산업관광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13조의2”를 추가하는 것으로, 산업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³⁾제1항제3호** 신설은 관광업무의 위탁 대상에 “산업관광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산업관광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 2) **현행 조례 제16조(지원범위)** ①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 3) **현행 조례 제17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내관광 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 산업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산업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벨리를 중심으로 IT·게임·콘텐츠 등 첨단산업 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 공간과 체험시설, 공공문화공간 등이 결합된 산업자원이 풍부하여 산업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산업 기반을 관광자원과 연계할 경우 도시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확장 측면에서도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산업관광의 개념과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위탁 운영 근거를 기존 관광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 규정과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향후 산업관광 정책 추진 시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상위법과의 정합성, 자치입법 권한 범위 및 규정 체계상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1. 산업관광 관련 정책자료
2.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자료 1】

□ 산업관광 관련 정책자료

성남시정연구원 정책Brief 제11호 중 발췌(2025.08.06.)

첨단산업 현장도 관광이 된다!

■ 산업관광이란?

- 산업관광은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행위’
- 산업관광은 그동안 박람회, 공장 견학이 주요 프로그램이었으나, 최근에는 체험과 학습 경험뿐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포괄하면서 감동과 공감, 인적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고도화 중
 - 교육, 연수 등 목적형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에서 일반 관광객을 위한 대중적 산업관광 프로그램들이 등장
 - 전형적 산업관광이 이루어지던 공장과 기업체뿐 아니라 일상 속 복합문화 공간, 기업의 팝업 스토어도 새로운 산업관광 공간으로 탄생

■ 성남에서 산업관광을?

- 판교테크노밸리는 해외 기업과 기관들의 벤치마킹 및 투자 탐색을 위한 투어 수요가 높지만, 대응에 한계
 - 게임산업에 관심있는 청년이나 동남아 국가 등에서 판교에 관심이 높고, 기술이 부족한 국가에서 한국에 와 업체를 찾고자 할 때 판교테크노밸리 견학을 추천하는 등 투어 수요가 많음
 - 공개했던 사옥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전시관을 홍보하지 않는 등 방문객 유입에 따른 운영 부담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산업관광 활성화 과정에서 도시와 기업의 이미지 브랜딩을 기대
 - 지역의 최첨단산업을 활용한 도시 이미지 브랜딩 수요 높음
 - 판교에 위치한 세계 TOP 게임사들을 적극 활용하여, 판교를 게임산업의 메카로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도록 산업과 지역 연계 브랜딩 촉구

■ 성남에서 산업관광이 가능한 이유

- 산업관광의 핵심 요소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접근성으로 제시됨.
 - 산업관광은 기업, 관광객,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이들 간 관계를 연결하는 콘텐츠와 스토리 구축이 중요함.
 - 대중교통 연계, 안내 체계, 휴식 공간 등 관광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경우 관광 활성화 가능성이 높음.
- 성남은 다양한 기업과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산업관광 스토리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평가됨.
 - 직원 선호도, 출퇴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판교에 입지한 카카오
 - 부지 선정 시 교통 접근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한국잡월드
 - 연구개발 환경 및 기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해 판교에 입지한 LIG넥스원
- 기업과 기관이 시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고객을 직접 만나는 공간도 산업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함.
 -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 : 네이버 라이브러리, 두산 헤리티지 1896, 카카오 오픈스페이스 등
 - 고객을 직접 만나는 공간 :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개방연구시설, LIG넥스원 홍보관 등
- 성남시는 차량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로 산업관광 추진 여건이 양호함.
 - GTX-A,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8호선 등 철도망이 성남을 연결
 -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함.

【참고자료 2】

□ 관계법령 발췌서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